

의안번호	2211674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0.
추 계 번호	25F33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
적용기한 2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수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4억 원(연평균 2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까지 발생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60조 제2항)	2	2	4	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0조 제2항 (공장의대도시밖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 내국법인의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－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7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0조 제2항 (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제하며, 세수 효과는 신고 및 납부시기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한다고 가정
 -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까지 발생
-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실적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계
 - 최근 2년간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억 원 수준을 유지

3. 상세 추계내역

1) 제도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5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
 - (개정연혁)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9.8.31. 신설된 규정으로,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대도시 및 이전 등에 대한 요건과 일몰기한 연장의 내용으로 개정
 - 1999.10.30. 신설: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에 해당하는 요건 및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금액의 계산 방법에 대한 시행령 신설
 - 2007.12.31. 일부개정: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의 사업연도의 기간에서,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로 과세이연 및 익금산입의 기간 확대
 - 2011.12.31. 일부개정: 지방 이전 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의 동일성 요건을 신설
 - 2022.12.31. 일부개정: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요건을 상위 입법하고, 수도권과 밀역제권역 외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공장을

영위하는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

- (현행규정)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5년간 균분하여 익금에 산입
 - 적용대상 대도시: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(기장군 제외), 대구광역시(달성군, 군위군 제외)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
 - 적용요건: 지방 이전 전과 후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고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지방으로 공장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 대도시 공장을 양도
 - ②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 지방에서 기존공장 취득 및 사업 개시
 - ③ 대도시 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 개시
 - 대상금액의 계산: ①×②
 - ① 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 - 해당 공장의 장부가액 -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
 - ② $\frac{\text{공장시설 이전비용} + \text{공장건물 및 부속토지가액} + \text{기계장치 취득·증축비 등}}{\text{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}}$
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→ (개정안) 2027.12.31.

□ (감면실적) 최근 5년('20~'24)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은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4년 2억 원 수준

- 연도별 감면실적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(5년 거치, 5년 균분 익금 산입)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

[표 2]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실적 및 전망: 2020~2024년
(단위: 억 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p
과세특례 실적	0.2	0.1	1	2	2

주: p는 잠정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신고연도

2) 추계방법

□ 내국법인이 대도시 내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지출예산서상 2024년 감면실적 잠정치가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추계

- 최근 2년간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실적은 2억 원 수준을 유지

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시설을 대도시 밖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경우 법인세수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총 4억 원(연평균 2억 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동 규정의 세액감면이 2년간 적용되므로, 세수효과는 2027~2028년까지 발생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: 법인세, 2027~2028년

(단위: 억 원)

	2027	2028	누적	연평균
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(안 제60조 제2항)	2	2	4	2

IV. 부대의견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수인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수인	02-6788-4839	suin2025@assembly.go.kr